

[변경 대비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| | |
|-------|--|
| 펀드명 |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|
| 변경서류 | 집합투자규약 |
| 변경사유 |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|
| 효력발생일 | 2023년 11월 24일 |

■ 변경대비표

| 항목 | 변경사유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문구 조정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3. (생략) 4. "증권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5. ~ 9. (생략)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3. (현행과 동일) 4. "증권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<u>법 제 229조제1호의</u>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5. ~ 9. (현행과 동일) |
| 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| 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 | 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 |
| 제14조(수익자명부)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</u>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<p>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 | <p>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⑧ (현행과 동일)</p> |
| 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 |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|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동일)</p> |
| 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| <p>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</p> |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---(<u>생략</u>)---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 |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제1항의 ---(<u>생략</u>)---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|
| 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| <p>오기 정정</p> | <p>① 다음 ---(<u>생략</u>)---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회계기간</u>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① 다음 ---(<u>생략</u>)---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계약기간</u>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~ 5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동일)</p> |
| 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|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 | 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 하</p> | 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 하</p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<p>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</u>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|
| 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| 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|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<u>법시행령 제225조의2</u>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|
| 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<u>법시행령 제83조 제2항</u>으로 정하는 때</p> <p>②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|
| <부칙> | | <신설> | < 부 칙 14 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|

<끝>